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중앙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이준호

전화 02-530-4780 / 팩스 02-536-5410

보 도 자 료

2024. 8. 9.(금)

제 목

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의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, 세무공무원에 대한 금품로비 등 사건 수사결과
- 핵심 경영진, 전·현직 세무공무원 등 4명 구속, 총 20명 기소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(부장검사 이진용)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 업체인 A사 핵심 경영진들의 비자금 조성 및 금품로비 사건을 수사한 결과,
 - **[비자금 약 225억 원 조성]** A사 경영진들이 10여 년 간 하위 판매대행 업체 등과 공모하여 **가공거래를 통해 약 225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**하고,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**약 30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**하거나 **코스닥 상장사를 동원하여 약 9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**한 사실을 규명하였으며,
 - **[과세당국 및 사법기관 기만]**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와 고발로 인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, **공인회계사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실질 거래 증빙 자료를 조작한 후 과세당국, 법원 등에 제출**하는 방법으로, 수년 간 **벌과금 추징 및 형사처벌을 면탈**한 사실을 적발하여 경영진, 공인회계사, 가공거래업체 대표 등 **9명을 기소(구속 2명)하고, 법인 6개사를 기소**하였음
 - **[전·현직 세무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]** A사의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중, **간부급 세무공무원, 전직 세무공무원인 세무사** 등이 A사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여 이들을 **특가법위반(뇌물) 등 혐의로 구속**하는 등 **전·현직 세무공무원 5명을 기소(2명 구속)하고, 수수한 금품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을 의뢰**하였음
-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향후에도 기업의 건전성과 조세 정의를 해하는 기업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임

1 주요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(상세 피고인 별 공소사실은 별지2 참조)

[※ 음영표시는 구속 피고인]

| 순번 | 주요 피고인 | 신분 | 주요 공소사실 요지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 | ㄱ○○ (63세) | A 회사 대표이사 | · '14. 8. ~ '24. 3. 거래상대방과 가공거래를 통해 법인 자금을 유출한 후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약 225억 원 조성 후 임의 유용【 특경법위반(횡령,배임) 】 |
| 2 | ㄴ○○ (53세) | A 회사 본부장 | · '14. 8. ~ '24. 3.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약 254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,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5년간 법인세 합계 약 30억 원 포탈【 특가법위반(조세,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 】 |
| 3 | ㄷ○○ (48세) | A 회사 상무 | · '19. 11. ~ '23. 9. 실질거래 증빙자료를 조작, 제출하는 방법으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, 형사재판 등을 방해【 위계공무집행방해, 증거위조교사, 위조증거사용교사 등 】 |
| 4 | ㅇ○○ (48세) | 공인회계사, B회사(코스닥 상장사) 부사장 | · '19. 11. ~ '23. 9. A사의 세무대리인으로 위촉된 후 세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억 9천만 원을 수수하고, 8회에 걸쳐 세무조사를 방해【 공인회계사법위반,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】 · '20. 1. ~ '23. 12. A사에 비자금을 조성해 줄 목적으로, 코스닥 상장사 B를 동원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합계 1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【 조세범처벌법위반 】 등 |
| 5 | ㅈ○○ (54세) | ○○지방국세청 팀장(5급) | · '22. 4. ~ 6. ○○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원만히 종결해 달라는 명목으로 ㅇ○○ 등으로부터 합계 8,000만 원 수수 【 특가법위반(뇌물) 】 등 |
| 6 | ㅋ○○ (51세) | △△세무서 팀장(6급) | · '21. 3. ~ '22. 8. ◇◇세무서 세무조사 관련 알선해달라는 명목으로 ㅇ○○으로부터 합계 3,000만 원 수수 【 특가법위반(알선수재) 】 |
| 7 | ㅌ○○ (48세) | □□세무서 팀원(7급) | · '20. 5. ~ '20. 8. A사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명목으로 ㅇ○○으로부터 500만 원 수수 【 뇌물수수 】 |
| 8 | ㅍ○○ (59세) | 세무사 (前 세무공무원, 5급) | · '20. 3. ◇◇세무서 세무조사 관련 알선해달라는 명목으로 ㅇ○○으로부터 합계 5,400만 원 수수 【 특가법위반(알선수재) 】 등 |
| 9 | ㅎ○○ (47세) | 세무사 (前 세무공무원, 6급) | · '20. 5. ~ '20. 8. ◇◇세무서 세무조사 담당자로서 조사를 원만히 종결한 대가로 ㄱ○○으로부터 합계 2,000만 원 수수 【 뇌물수수 】 |

2 수사 경과

- '24. 1. 대검 수사첩보 접수
 - '24. 2~5. ○○지방국세청, A사 등 관련 업체, 제1~4차 압수수색
 - '24. 5. 17. A사 대표 ㄱ○○ 등 경영진 2명 구속기소, A사 본부장 불구속 기소
 - '24. 5. 22. 코스닥 상장사 B 등 제5차 압수수색
 - '24. 6. 13. 코스닥 상장사 부사장(공인회계사) ○○○ 구속영장 기각
- ※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가 상당부분 수집되었으며, 피의자가 증거를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
- '24. 7. 2~22. 전·현직 세무공무원 및 관할 세무서 등에 대한 제6~7차 압수수색
 - '24. 8. 1. 전·현직 세무공무원 2명 구속 기소, 6명(공여자 3명) 불구속 기소
 - '24. 8. 9. A사의 핵심 경영진 3명, 공인회계사, 가공거래업체 대표 4명,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법인 등 15명 불구속 기소

※ 기소 인원이 총 26명이나 6명은 추가 병합기소된 경우이므로 실제 기소된 인원은 20명임

3 수사 결과 및 의의

●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의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전모 규명

- (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) A사 경영진들은 A사 설립 직후부터 일부 거래 업체들과 공모하여 가공거래를 통해 유출한 법인자금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약 225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왔고, 이들의 범행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기 직전까지 10여 년간 지속되었음

【별지 1】 '범행방법 및 구조도' 참조

업체 압수수색 시 발견한 현금



- (코스닥 상장사를 동원한 범행) A사 경영진들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더욱 은밀하게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기존 비자금 조성 루트를 중단하고, 코스닥 상장사 B 부사장과 공모하여 위 상장사와의 가공거래를 통해 약 9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 및 기업건전성을 해한 사실을 확인함
- (끈질긴 수사를 통한 범행 전모 규명) A사 경영진들은 10여 년간 주기적으로 가공거래 업체를 교체하고, 거래 상대방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과세당국의 세무조사, 형사재판 등에서 면죄부를 받아왔으나, 가공거래업체 한 곳에 대한 풍문성 제보를 접수한 후, 수회 압수수색을 통해 A사의 실질거래자료를 전수 조사, 분석 후 물증을 확보하여 A사 범행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음

● 수년 간에 걸친 과세당국 및 사법기관에 대한 기만행위를 적발

- (치밀하고 조직적인 증거 조작) A사 경영진들은 세무대리를 맡은 공인회계사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실질거래 증빙자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처방전 실적 통계표 등 증거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, ○○지방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에서 단 한 차례도 가공거래 혐의로 적발되지 아니하였음
- (증거조작을 통한 사법방해) 특히 일부 세무서에서 A사 거래상대방에 대해 가공거래 혐의로 고발을 하자,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을 무력화 하고, A사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를 막기 위해 검찰과 법원에 조작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영진이 직접 출석하여 위증을 한 결과, 2건의 형사재판에서 1심 및 2심 모두 무죄선고를 받아내는 등 심각한 사법방해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함

○○지법 판결문(20고단○○○) 무죄이유 발취

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, 앞서 인정한 의심스러운 사정들만으로는 ■■■과 A사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증거가 없다. (중략)

○ ◇◇세무서는 2020. 2.경 위 자료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사가 ■■■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 거래에 기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, A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결정처분을 하지 않았다.

- A사가 ■■■과의 실질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수수료 자료 및 계좌이체증빙, 이메일 지출결의서 내역, **처방전 발급기록** 등은 임의로 조작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자료로 이와 같이 실제 거래 없이 방대한 자료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짐 (중략)

○ A사는 2016. 1. 16.부터 2017. 7. 6.까지 ■■■에 의약품 영업대행을 위탁하였다 면서 위 기간 동안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, A사의 직원인 노○○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기간 동안 ■■■에 의약품 영업대행을 위탁하고 영업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.

● 전·현직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로비 적발

- (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금품수수) A사 경영진들과 세무대리를 맡은 공인회계사 등은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전직 세무공무원인 세무사와 현직 세무공무원 4명(이후 1명은 퇴직)에게 최대 8,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벌인 사실을 적발함
- (일부 세무공무원의 도덕적 해이) 대다수의 세무공무원들이 묵묵히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, A사의 세무조사를 담당하거나 이를 알선 하였던 일부 세무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,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내부 조사 정보를 유출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있었음을 확인함

4 향후 계획

● 조세범죄 전문 수사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·조세비리에 대한 엄정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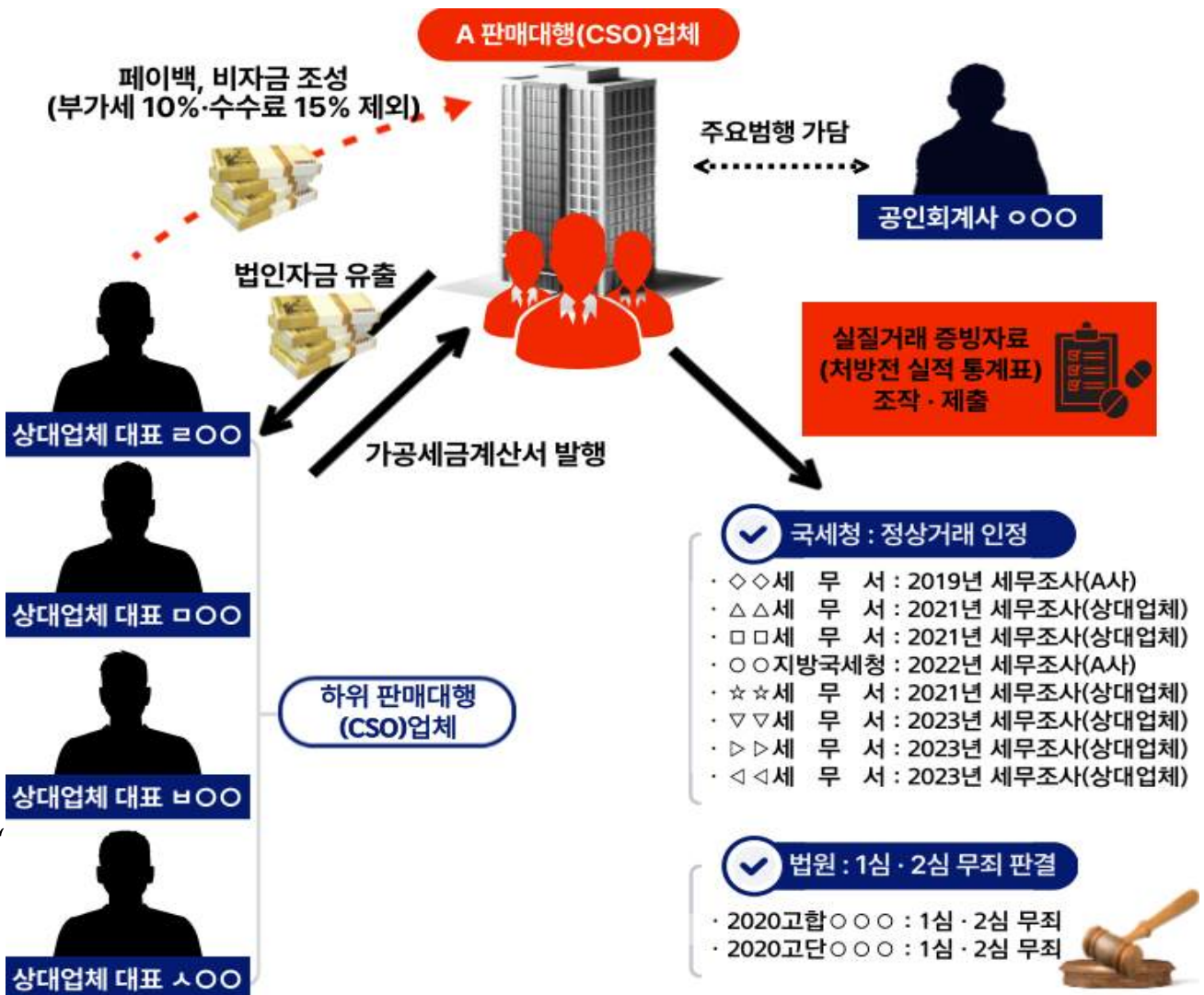
- 불법적인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조세 포탈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과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의 납세의욕을 저하시키는 중대범죄임
- 검찰은 향후에도 조세 및 기업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축적된 역량과 전문성을 기초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조세 관련 기업범죄 수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기업·조세비리 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☑

범행방법 및 구조도

【일반적인 판매대행업(CSO) 거래구조】



【A회사의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 구조도】



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약

| 구분 | 공소사실 요약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A사 경영진 | ㄱ○○ (A사 대표이사) | <p>■ 공범 범죄사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14. 8.경 ~ '24. 3.경 가공거래 등을 통해 지급한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,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그 중 약 55억 원은 가공거래업자들에게 부외자금 조성 대가로 지급하고, 약 170억 원은 비정상적인 용처에 임의로 유용 [특경법위반(횡령), 특경법위반(배임)] · '14. 8.경 ~ '24. 3.경 위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수단으로,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공급가액 18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, 가액이 부풀려진 공급가액 66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 [특가법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, 조세범처벌법위반] · '19.경 ~ '23.경 허위·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액 상당을 법인세 신고 시 매출 원가에 포함시켜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A사의 법인세 합계 약 29억 5,200만 원을 포탈 [특가법위반(조세)] · ○○○ 등과 공모하여 실질거래 증빙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, '19. 11.경 ~ '23. 9.경 8회에 걸쳐 관할세무서 등의 세무조사를 방해하고, '21. 5.경 ○○지법 재판 당시 직원을 시켜 조작한 자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자료인 것처럼 제출하여 1,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음 [위계공무집행방해, 증거위조교사, 위조증거사용교사] |
| | ㄴ○○ (A사 본부장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○○○ 등과 공모하여 실질거래 증빙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, '19. 11.경 ~ '23. 9.경 8회에 걸쳐 관할세무서 등의 세무조사를 방해하고, '21. 5.경 ○○지법 재판 당시 직원을 시켜 조작한 자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자료인 것처럼 제출하여 1,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음 [위계공무집행방해, 증거위조교사, 위조증거사용교사] |
| | ㄷ○○ (A사 상무) | <p>■ ㄷ○○ 단독범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21. 9.경 ㄷ○○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○○ 지법에 출석하여, 위 업체와 A사 간의 거래는 진성거래였다고 허위 증언 [위증] |
| A사의 가공거래 상대방 업체 운영자 | ㄹ○○ (A사 거래상대방 대표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14. 8.경 ~ '19. 12.경 A사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, A사에 공급가액 합계 약 88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, A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 받아 그 중 약 22억 원 상당을 수수료 등으로 취득 [특경법위반(배임), 특가법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 |
| | ㅁ○○ (A사 거래상대방 C사 대표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19. 6.경 ~ '23. 12.경 A사와 가공거래를 하거나, 일부 용역대금을 과다계상하여 공급가액 합계 약 12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, 약 43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, A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약 12억 원 상당을 수수료 등으로 취득 [특경법위반(배임), 조세범처벌법위반] |
| | ㅂ○○ (A사 거래상대방 대표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20. 1.경 ~ '22. 6.경 용역 공급가액을 과다계상하여 약 23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, A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약 3억 원 상당을 수수료 등으로 취득 [업무상배임, 조세범처벌법위반] |
| | ㅅ○○ (A사 거래상대방 D, E, F, G사 대표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21. 3.경 ~ '24. 3.경 A사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, A사에 공급가액 합계 약 61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, A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약 19억 원 상당을 수수료 등으로 취득 [특경법위반(배임), 특가법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 |
| A사 경영진의 범행을 도운 공인회계사 및 그 직원 | ㅇ○○ (공인회계사, 코스닥 상장사 B 부사장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A사의 경영진 등과 공모하여 실질거래 증빙 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, '19. 11.경 ~ '23. 9.경 8회에 걸쳐 관할세무서 등의 세무조사를 방해하고, '21. 5.경 ○○지법 재판 당시 직원을 시켜 조작한 자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자료인 것처럼 제출하여 1, 2심 모두 무죄선고를 받음 [위계공무집행방해, 증거위조교사, 위조증거사용교사] · '19. 11.경 ~ '22. 4.경 공인회계사(세무대리인)로서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약 2억 9,000만 원을 수수료하고, A사 경영진을 도와 A사의 법인 자금으로 ㄹ○○의 벌금 약 6억 5,000만 원 대납 [공인회계사법위반, 특경법위반(횡령)방조]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A사에 부외자금을 조성해 줄 목적으로, '20. 1.경 ~ '23. 12.경 코스닥 상장사 B를 동원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억 4,6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, 발급을 알선 [조세범처벌법위반] '20. 5. 초순경 ㄱ○○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사업자 등록하면서 그 소재지를 B사로 임의로 정한 후, 위 B사 대표이사가 ㄱ○○에게 위 법인 사무실 일부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위조하고 이를 ○○세무서에 제출 [사문서위조, 위조 사문서행사] |
| | ㄱ○○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A사의 경영진 및 ○○○과 공모하여 실질거래 증빙 자료를 조작한 후 이를 세무조사 담당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, '19. 11.경 ~ '23. 9.경 8회에 걸쳐 관할세무서 등의 세무조사를 방해 [위계공무집행방해] |
| 금품 수수한 전·현직 세무공무원 | ㄷ○○ (○○지방국세청 팀장, 5급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모하여, '22. 2.경 ~ '22. 3.경 ◇◇세무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알선 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,400만 원을 수수하고, 범죄수익 발생원인에 관한 사항을 가장[특가법위반(알선수재)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] - ㅍ○○은 위 5,400만 원 중 4,400만 원 수수 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4,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[조세범처벌법위반] |
| | ㅍ○○ (세무사, 前 세무공무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ㄷ○○은 '18.경 ~ '22.경 ○○지방국세청 ○○실에서 근무하였던 것을 기화로, '○○ 지방국세청의 A사 등에 대한 합동 세무조사를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달라'는 명목 등으로 ○○○ 등으로부터 현금 합계 8,000만 원 수수 [특가법위반(뇌물)] |
| | ㅎ○○ (세무사, 前 세무공무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0. 5.경~'20. 8.경 A사에 대한 ◇◇세무서의 세무조사 담당 팀장으로서 A사의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한 대가로 A사 대표이사 ㄱ○○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2,000만 원을 수수 [뇌물수수] |
| | ㅋ○○ (△△세무서 팀장, 6급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19. 11.경 A사에 대한 ◇◇세무서의 세무조사 당시 과거 근무연이 있던 위 조사 담당 팀장 ㅎ○○에게 사건 처리에 관한 부탁을 하고, 세무조사 결과가 정상거래로 종결된 이후 ○○○으로부터 '21. 4.경 현금 1,000만 원, '22. 8.경 현금 2,000만 원을 수수 [특가법위반(알선수재)] |
| | ㅌ○○ (□□세무서 팀원, 7급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3.경 ○○○로부터 'A사에 대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중지해달라'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 [뇌물수수] |
| 금품 공여한 A사 관계자들 | ㄱ○○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0. 5.경 ~ '20. 8.경 A사에 대한 세무조사 담당 팀장으로서 A사의 가공거래를 정상 거래로 판단한 세무공무원 ㅎ○○에게 4회에 걸쳐 현금 2,000만 원을 교부 [뇌물공여] |
| | ㄴ○○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모하여, '22. 5. ~ '22. 6.경 A사에 대한 ○○지방국세청의 합동 세무조사 당시 ㄷ○○에게 세무조사를 원만히 해결해달라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ㄷ○○에게 현금 7,000만 원을 교부 [뇌물공여] |
| | ㅇ○○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ㅇ○○은 ①'21. 3.경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말아달라는 명목으로 A사 세무조사 담당자인 ㅌ○○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 ②'22. 4.경 A사에 대한 ○○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전달해 주고, 세무조사를 원만히 해결해달라는 명목으로 ㄷ○○에게 현금 1,000만 원을 교부 [뇌물공여] |
| 법인 (양벌규정) | A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19.경 ~ '24.경 대표자인 ㄱ○○, 임원 ㄴ○○, ㄷ○○ 등이 공모하여 법인세 29억 5,200여만 원을 포탈하고, 254억 원 상당의 허위-거짓 세금계산서를 추취 [조세범처벌법위반] |
| | C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2. 11.경 ~ '23. 12.경 대표자인 ㄹ○○이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억 9,5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[조세범처벌법위반] |
| | D, E, F, G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1. 3.경 ~ '24. 3.경 D, E, F, G 회사의 대표자인 ㅊ○○이 6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6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[조세범처벌법위반] |

※ 음영 표시는 구속 피고인